

# 외국 운전면허증을 일본 면허증으로 변경하시는 분들께

## 【변경 가능한 조건】

- ① 취득한 외국 면허증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 ② 외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날부터 통산하여 3개월 이상 그 나라에서 체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③ 일본국 법령에서 규정한 도로교통법, 그 외 자동차 등 운전에는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예비심사】

변경하시는 분은 신청하기 전에 아래의 복사본(흑백 가능) 서류를 우편등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예비심사가 끝난 후 서류심사의 일정에 대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주소 : 「〒994-0068 山形県天童市大字高掬 1300 山形県総合交通安全センター試験係」 앞

예비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복사본 서류

- ① 외국 운전면허증(앞뒤 양면)
- ② 외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날부터 통산하여 3개월 이상 그 나라에 체재하고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여권(교부된 날이나 출입국의 스탬프), 출입국 증명서, 대학의 재학 증명서 등
- ③ 주민표 사본(본적지(외국인은 국적 등)가 기재된 것. 주소는 야마가타현내 인 것.)
- ④ 외국인인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외국인 등록 증명서)
- ⑤ 외국면허를 일본어로 번역한 것(아래에 명시한 기관에서 작성한 번역문)
  - 대사관, 영사관
  - 일본자동차연맹(JAF)
  - 집플러스 주식회사
  - 대만 일본 관계 협회(대만 면허)
  - 독일자동차연맹(독일 면허)
- ⑥ 기타 증명서
  - 중국 면허를 일본 면허로 변경하시는 분은 중국인민공화국이 발행한 「거민신분증」
  - 필리핀 면허를 일본 면허로 변경하시는 분은 「오피셜 레시트(Official Receipt)」
  - 파키스탄 면허를 일본 면허로 변경하시는 분은 대사관이 발행한 「면허 증명서」
  - 면허 취득 연월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증명서 등(예: 운전경력증명서)
- ⑦ 연락처 등을 기재한 메모(예비심사가 끝난 후 당일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서류심사】※예비심사가 끝난 후 지정한 일정에 실시합니다.

서류심사에 필요한 서류

- ① 예비심사에서 송부해 주신 서류의 원본
- ② 예비심사가 끝난 후 별도로 지정한 서류
- ③ 얼굴 사진 1장 (세로 3cm × 가로 2.4cm)
- ④ 시험 수수료 (보통 면허: 2,550 엔, 이륜차 면허: 2,600 엔)
- ⑤ 교부 수수료 2,050 엔

일본어 이해, 회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통역자의 동반이 필요합니다.

【지식확인】※면제되는 나라 및 지역은 뒷면 참조

- ① 자동차 운전에는 필요한 지식에 관한 출제는 21개국어로 실시
- ② 5분간 10문제 (7문제 이상 정답이면 합격입니다)

【기능확인】※면제되는 나라 및 지역은 뒷면 참조

- ① 지식확인에 합격하신 분

② 현 종합교통안전센터 기능시험 코스에서 실시

**【교부 수속】**

면허증은 심사를 합격한 당일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후일, 재방문을 하셔서 사진촬영 등을 실시한 후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예약처】**

- ① 전화번호: 023-655-2150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② 자동 음성 서비스에 따라 다이얼「1」를 선택하십시오.
- ③ 재시험(지식확인·기능확인)은 사전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지식확인·기능확인이 면제되는 나라 및 지역**

~다음 특례국(지역)에서 발행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지식확인 또는 기능확인이 면제됩니다~

◇ 지식확인과 기능확인이 둘 다 면제되는 나라(지역)

아이슬란드,아일랜드,미국(오하이오주, 오리건주, 버지니아주, 하와이주, 메릴랜드주 및 워싱턴주에 한한다.), 영국, 이탈리아, 호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한국, 그리스,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체코, 덴마크, 독일, 뉴질랜드, 노르웨이, 헝가리, 핀란드,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 포르투갈, 모나코, 룩셈부르크, 대만	29 개국
--	-------

◇기능확인만 면제되는 나라(지역) ~지식확인만 실시~

미국(인디애나주)	1 지역
-----------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실 때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의해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내에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외국에서 취득한 국제면허증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에 관한 조약(제네바조약)을 바탕으로 발급된 국제면허증으로 일본에서 운전 가능한 기간은 일본에 상륙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이며,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내(발급된 날부터 기산해서 1년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에 주소가 있으신 분(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된 분)은 출국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간 중 다시 일본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기산일로 여겨지는 일본에 상륙한 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제면허증의 유효기간(발급된 날부터 기산해서 1년간)이 만료되고 새롭게 국제면허증을 취득하여 운전하는 경우, 취득한 국가에서 연속으로 3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았을 경우 일본 내에서 운전할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스위스, 독일, 프랑스, 벨기에, 모나코, 대만의 외국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일본어 번역문을 지참해야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 가능한 기간은 위의 내용과 같으나, 일본에 상륙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인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일본 내에서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야마가타현 종합교통안전센터 시험 담당(係) TEL 023-655-2150  
(다이얼 1) 2024.7